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만 방문접수(건본주택)도 가능합니다.
-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하며, 건본주택에서 청약 신청시(10:00 ~ 14:00) 자격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신청자가 등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에 의거 2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I 공급개요 안내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670-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4층 ~ 최고 지상29층 7개동 총 9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추후 모집공고 참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괄호( )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

주택형		84A	84B	84C	84D	102	소계
총 세대수		427	200	170	54	116	
해당 기관별 세대수 배정 (10%)	국가유공자 등	8(16)	4(8)	4(8)	1(2)	-	17(34)
	장기복무 제대군인	6(12)	3(6)	2(4)	1(2)	-	12(2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8(16)	4(8)	3(6)	1(2)	-	16(32)
	중소기업 근로자	11(22)	5(10)	4(8)	1(2)	-	21(42)
	장애인	9(18)	3(6)	3(6)	1(2)	-	16(32)
	북한이탈주민	1(2)	1(2)	1(2)	0	-	3(6)
배정 세대수(예비자)		43(86)	20(40)	17(34)	5(10)	-	85(170)

- **당첨 예정자** :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 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II 공급일정 안내 [예정]

구 분	공급 일정(예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2년 12월 23일 (금)	* 일간신문 및 분양 홈페이지(http://) * 분양문의 : 055)267-1965 (10:00 ~ 18:00)
사이버 건본주택 개관	2022년 12월 23일 (금)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3년 01월 02일 (월)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09:00~17:3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건본주택방문접수가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함. * 건본주택 신청 시(10:00~14:00) * 자격입증 서류 지참 필수
당첨자 등·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BL] 2023년 01월 10일 (화) [1BL] 2023년 01월 11일 (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계약 체결	2023년 01월 25일 (수) ~ 2023년 01월 31일 (화) 7일간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 시간 : 10:00~16:00

- ※ 위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당사 건본주택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분
- 청약통장 가입 요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청약통장 미사용)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구분	경상남도(창원시)	그밖에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입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3조제3항에 의거 해당 지역인 창원시(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p>○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b>주택을 소유한 자.</b>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각호의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인정, 9호는 불인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p> <p>2.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b>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b>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p> <p>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p>
---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세대군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등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하나원 정착지원사무소

■ 당첨자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등 해당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2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특별공급)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IV 유의사항 안내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 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등)에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 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1BL, 2BL 등 2개 단지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명단이 확정된 분은 반드시 추천명단에 해당된 단지에 청약할 경우에만 당첨자로 결정되며, 추천명단으로 확정되지 않은 다른단지에 청약할 경우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상이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V 사업지 위치도



